

#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에 대한 고찰

-비트코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성 덕 근\*

## 【목 차】

I. 서론	II.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II.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1. 개관
1. 개관	2.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탐지방안
2.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3.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3.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4.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4. 소결	5. 소결
	IV. 결론

## 【국 문 요 약】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재산 또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있어서, 먼저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탐지

\*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이 논문은 2022년 6월 30일 한국법학원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 및 집행절차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수정·보완 및 심화시킨 것임.

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가 활용될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집행법원 내지 집행관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는 가상자산의 보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트코인이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다면 개인키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압류명령 이후 처분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협력의무를 입법을 통해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압류명령 이후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금화절차에 있어서는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 서론

최근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약 23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55.2조원이었던 2021년 말에 비해 32.2조원이 감소된 것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상승, 유동성 감소 등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과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유통되는 가상자산은 (중복 제외시) 638개로 조사되었으며,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이용자는 약 690만 명이라고 한다.<sup>1)</sup> 이처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NFT(Non-Fungible Token) 등으로

1) 금융위원회,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2년 9월 26일 자 보도자료.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비록 그 시장규모가 실물경제처럼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지급결제수단과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관련된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sup>2)</sup> 하였고, 국세청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고액체납자 2천여 명에 대해 강제징수로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한 바 있다.<sup>3)</sup> 이처럼 가상자산은 자산거래 및 축적을 넘어 재산은닉의 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고, 민사집행실무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출급청구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례<sup>4)</sup>를 시작으로, 이후 몇 차례 가압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해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sup>5)</sup> 비록 2020년 3월 2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과 ‘가상

2)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판결. 참고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몰수의 대상을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는 ‘은닉재산’을 ‘몰수·추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판결에 의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되었지만, 관계법령의 미비로 인해 그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3년 이상 전자지갑에 그대로 보관되었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5일 시행됨으로 인해 수원지방검찰청은 몰수했던 비트코인을 매각하여 총 122억 9천여 만원을 귀속시킨 바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091100061>, 연합뉴스, ‘검찰, 2억 7천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국고귀속’, 2021년 4월 1일 자 기사).

3) 국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2021년 3월 15일 자 보도자료.

4) 울산지방법원 2018.1.5.자, 2017카합10471결정.

5) 그동안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다루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수차례 제출되었지만 아직 실제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및 신고의무가 제2조와 제7조의 개정으로 도입된 바 있지만, 이 법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이나 권리변동 및 민사집행과 관련된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sup>6)</sup>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에서 법적 성질과 민사집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변동이나 민사집행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sup>7)</sup> 결국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율하는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기존 법률이 관련 내용들을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가상자산에 관계된 내용들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한 후, 입법론적으로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고자 한다.

## II.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 1. 개관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기에 앞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등과는 다르게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가상자산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하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과 관련된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이현중, “가상재산(假想財産)에 대한 강제집행(強制執行)”,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2.6., 318~319면.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2.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 가. 가상자산의 개념 및 용어 정리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시장(市場) 및 정부에서조차 정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러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sup>8)</sup> 이러한 상황은 학계 및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가상화폐’<sup>9)</sup> 내지 ‘암호화폐’<sup>10)</sup>라는 용어가 자주 이용되고 있다. 그밖에 ‘가상자산’<sup>11)</sup>, ‘디지털화폐’<sup>12)</sup>, ‘암호자산’<sup>13)</sup>, ‘전자화폐’<sup>14)</sup>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8) <https://www.yna.co.kr/view/AKR20180109084400002> (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명칭도 혼선’, 2018년 1월 9일 자 기사); 이현중, 전계논문, 322-323면.

9) 윤배경,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인권과 정의, 제744호, 2018.6., 7-21면; 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금융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9.4., 147~199면; 최단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및 거래소 이용자의 권리 구제방안”,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20, 597~618면 등. 참고로 대법원 2018.5.30.선고, 2018도3619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10) 고흥석,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2021, 251-281면; 박정현,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민사적 일반 이론의 관점에서-”, Law & Technology, 제18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22, 12-23면; 송문호,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탈중앙화”,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9, 273-293면; 정진명, “암호화폐의 민사법적 문제”, 민사법학, 제98권, 2022, 3-36면 등.

11) 권지혜, “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와 착오이체의 법적 판단에 관한 시론-대법원 2021.12.16.선고, 2020도9789 판결을 대상으로-”, 법학연구, 제68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87-107면; 신지혜, “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3호, 한국소비자법학회, 2022.8., 89-118면; 천창민,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UNID ROIT의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3., 43-90면 등.

12) 박선중·김용재,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 2018.2., 349-392면; 정경영,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성격과 그 법적 포섭”,

각 용어마다 개념 및 개념에 포섭되는 내용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는 않다. 그 결과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특별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여러 용어의 혼용으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와 이해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암호자산(crypto asset)’<sup>15)</sup>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sup>16)</sup> 등이 사용되고 있고, 그밖에 ‘가상자산(virtual asset)’,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디지털자산(digital asset)’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sup>17)</sup>

한편 앞서 소개한 특정금융정보법은 2018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FATF)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의 요청에 따라 제시했던 국제기준을 기초로 하여 개정되었고,<sup>18)</sup> 이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호에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금융법연구, 제17권 제3호, 2020.12., 33~78면 등.

- 13) 홍은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2109.12., 115-142면; 황석진, “암호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ICO)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등.
- 14) 김재두,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 경영법률, 제18권 제3호, 2008.4., 147~179면; 박성민, “전자화폐의 위·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고찰”, 동아법학, 제53호, 2011.11., 141~166면 등.
- 15)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Reports on Work Underway to Address Crypto-Asset Risks, 2019.5.31.(김지웅, “가상자산에 관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대한 검토”, BFL, 제102호, 2020.7., 24면에서 재인용).
- 16) Communiqué,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Buenos Aires, 2018. March 19-20, pp.2-3(김지웅, 전제논문, 24면에서 재인용).
- 17) ‘virtual currency(가상화폐)’는 미국, 스위스, 중국, 일본, EU 등에서 사용되고 있고, ‘digital asset(디지털 자산)’은 프랑스와 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digital currency(디지털 화폐)’는 호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Cambridge Center for Alternative Finance, Global Cryptoasset Regulatory Landscape Study, 2019, p.36).
- 18) 김지웅, 전제논문, 24면.

이른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낮거나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가목 내지 사목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요소는 ① 경제적 가치, ② 전자적인 거래 또는 이전의 가능성, ③ 전자적 증표 및 관련 권리라고 정리될 수 있다. 생각하건대 비록 위 법의 입법목적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법령들 간에 개념상 혼란을 예방하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가급적 통일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등의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하겠다.<sup>19)</sup>

#### 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관계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블록체인(Blockchain)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0)</sup> 블록체인은 ‘블록(block)’과 ‘체인(chain)’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한 용어로, ‘블록을 체인(사슬)의 형태로 엮은 것’을 의미한다. 이를 공학적인 관점에서 재정의하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cryptography)’을 사용하여 ‘블록’이라는 용기(container of data structure)에 담고, 이 블록을 P2P(peer to peer)<sup>21)</sup>

19) 이에 대해 민사집행법이 강제집행의 대상에 대하여 ‘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고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가상재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이현중, 전제논문, 325면). 이러한 입장은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설득력이 있고 향후 입법화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으로서 결제(지급)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0) 하지만 블록체인과 관련이 없는 가상자산도 존재하는데,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사목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종래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을 비교한 연구로는, 이원삼, ‘가상화폐의 의미와 법적 지위-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1집 제2권, 한국상사판례연구회, 2018.6., 288~292면 참조.

21)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 등의 데이터를 전송 내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통신기술을 말한다.<sup>22)</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10분이라는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정리한 것(블록)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불가역적으로 기록하고, 모든 거래 기록을 포함한 거래장부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모든 참가자가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sup>23)</sup>,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가상화폐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가상자산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어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sup>24)</sup>이라는 방식으로 생성되고 있으므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다.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보편적인 논의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비트코인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지금까지 등장한 여러 가상자산들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sup>25)</sup> 실제 법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후 논의될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어 거래소,

22) 황정훈·서용모·정승욱·양영식·홍진욱·송인방, 「미래사회 with 블록체인」, 박영사, 2020, 15면.

23) 정영수,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소고”, 서울법학, 제29권 제2호, 2021.8., 165~166면.

24)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은 목표값 이하의 해시를 찾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해당 작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말한다. 채굴(mining)을 통해 작업증명이 이루어지며, ‘포우’ 또는 ‘피오더블유’ 라고 읽는다.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라이트코인(litecoin), 비트코인캐시(BitcoinCash) 등의 대표적인 가상화폐들은 작업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http://wiki.hash.kr/index.php/%EC%9E%91%EC%97%85%EC%A6%9D%EB%AA%85>).

25) 2022년 7월 기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가 운영하는 바이낸스 리서치(Binance-Research)가 2021년 1월 28일 발간한 ‘2021 글로벌 크립소 사용자 지수(2021 Global Crypto User Index-Crypto user profiles, attitudes, and motivations)’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한 61,000명 이상의 전체 사용자들 중 65%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30%의 사용자는 자신의 가상자산 포트폴리오에 1~20%, 11%의 사용자는 21~40%, 14%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41~60%를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inance-Research, 2021 Global Crypto User Index-Crypto user profiles, attitudes, and motivations, pp.20-21).

전자지갑, 공개키와 개인키 등의 개념과 기능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 1) 비트코인의 개념 및 특징

비트코인(Bitcoin)은 2008년 10월 31일 미지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의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9페이지의 논문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고, 2009년 1월 3일 위 논문에 따라 구현된 최초의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이 탄생하였다. 비트코인은 넓은 의미로 ‘인터넷 프로토콜(통신규약)’이자 ‘중개기관의 개입이 없는 형태의 전자적 P2P 지급네트워크’를, 좁은 의미로는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되는 디지털 가상화폐’를 의미하며<sup>26)</sup>,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탄생한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전자화폐<sup>27)</sup>와는 달리 중앙에서 관리하는 특정발행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특징을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라고 한다.

### 2) 비트코인의 작동원리

#### 가) 비트코인의 저장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트코인이 보관되어 있는 가상공간으로서 비트코인 소유자의 자금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지갑(wallet)과 함께 공개키(public key), 개인키(private key)를 생성해야 한다. 전자지갑은 은행의 계좌번호와 같이 비트코인을 저장할 수 있는 특정 주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1A1zP1eP5QGefi2DMPTfTL5SLmv7DivfNa’<sup>28)</sup>와 같이 알파벳과 숫자가 결합된 33~34자리의 문자열로 구성되는 점이 특징이다. 전자지갑의 생성 및 보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입력 등의 제한이 없고, 어떠한 통제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마치 현금과 같이 불법적이거나 비

26)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4, 380면.

27) 전자화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가 정의하고 있다.

28) 이 문자열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3일에 만든 비트코인 지갑의 주소이다.

밀스러운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비트코인이 익명거래를 보장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29)</sup> 전자지갑은 이용주체에 따라 개인지갑과 거래소지갑으로 구분되고, 인터넷 연결 여부를 기준으로 핫월렛(hot wallet)과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핫월렛에는 웹지갑<sup>30)</sup>, 모바일지갑<sup>31)</sup>, 데스크탑지갑<sup>32)</sup> 등이 있고, 항상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 반면 콜드월렛은 USB 등과 같이 하드웨어 형태의 지갑으로서 별도의 저장장치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기 때문에 보안에는 유리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개키는 은행의 계좌번호와 같이 입금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이고, 개인키는 이용자의 지갑프로그램에 저장되며 비트코인 이체거래시 입력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전자지갑의 소유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일종의 비밀번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sup>33)</sup> 공개키와 개인키는 각각 숫자와 알파벳 대·소문자가 무작위로 조합된 26~35자리와 52자리의 문자열로 구성되어 암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전자지갑을 통해 관리되는데, 만약 분실한다면 P2P 네트워크의 특성상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보관 및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29) 박영호,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실무연구(V), 제141집, 법원도서관, 2021, 370-371면.

30)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는 지갑으로, 브라우저(대부분 크롬)의 확장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항상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가장 취약하지만, 코인을 즉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가장 편리하고 실용적이다.

31)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따라 안드로이드(Android)와 아이오에스(iOS)로 나뉜다.

32)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Bitcoin Core, Exodus 등이 있다.

33) 전승재·권현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2018.5.30., 78면; 박영호, 전계논문, 371면; 정영수, 전계논문, 166~167면. 개인키는 은행거래에 있어서 자신의 계좌에 접속하기 위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합쳐놓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비트코인의 취득

비트코인은 ① ‘거래’의 방식으로 이미 생성된 비트코인을 전통적인 화폐를 가지고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고, ②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른바 ‘채굴’)에 대한 대가로서 취득할 수도 있다. 이들 중 전자는 승계취득, 후자는 원시취득의 구조와 유사하다.<sup>34)</sup>

채굴(mining)은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거래내역이 담긴 블록을 생산하고 연결하여 블록체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지급받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sup>35)</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가상자산들이 작업증명(PoW)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방식에서는 작업증명에 필요한 암호화 해시함수<sup>36)</sup>를 계산하면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가상자산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복잡한 암호나 수학적 퍼즐을 사용자 컴퓨터의 CPU와 GPU를 사용하여 풀어낸 것에 대한 대가로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sup>37)</sup>

### 다) 비트코인의 거래구조

비트코인 ‘거래(transaction)’는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통해 담보된다. 각각의 사용자는 자신과 상대방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하여 거래를

34) 김흥기, 전계논문, 382~383면.

35) 김재진·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 2022, 21면.

36) 해시함수(hash function)는 임의적인 길이의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취하고 해시값(hash value)이라고 불리는 고정된 길이의 비트 배열을 출력값으로 취하는 알고리즘을 말한다(페트로 프랑코(김동은·어경훈 譯), 「제대로 배우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암호학, 컴퓨터공학, 경제학을 중심으로-」, 중앙경제평론사, 2019, 190면).

37) 채굴을 통해 지급되는 비트코인의 양은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게 되어 있고, 공급량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굴을 통해 지급되었던 비트코인은 2009년 50개에서 2020년에는 6.25개로 줄어들었고, 2040년에 총 2,100만 번째 비트코인의 생성을 끝으로 채굴이 중지될 예정인데, 2022년 4월 1일에 1,900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되었기 때문에 현재 남은 비트코인은 200만 개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 채굴에 필요한 비용과 암호의 난이도 상승, 최근 급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이 직접 채굴을 통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더 이상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데, 거래자가 수취자의 공개키와 이체할 액수를 입력하면, 수취자는 개인키를 입력하여 이를 취득하게 되는 구조이다.<sup>38)</sup> 만약 A로부터 B에게 비트코인이 이전되는 거래라면, 먼저 A는 본인의 전자지갑에서 B의 공개키와 송금액을 입력하고, 자신의 공개키를 추가하여 해시를 계산한 후, 자신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암호화, 즉 전자서명을 하면, 해당 거래내역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의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다. 이후 B가 A의 공개키로 검증하고 자신의 개인키를 입력하면 A의 비트코인이 B에게 이전되는 과정이 완료된다. 해당 거래내역은 블록으로 그룹화되고, 각각의 블록은 해당 블록이 포함되어 있는 블록체인에 기록되게 된다. 거래는 각각의 거래들을 나타내는 블록에 그 거래가 포함되었을 때 확정되는데, 여기서 ‘확정(confirmation)’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당거래를 수행하였으며,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때 해당 거래로 형성되는 블록은 약 10분마다 블록체인에 새롭게 연결되는데, 매 10분마다 추가되는 블록에 의해 이미 형성된 블록들의 유효성이 재확인되게 된다.<sup>39)</sup>

한편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있어서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만약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 복수의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경우 더 긴 블록체인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The longest chain wins’ 전략이라고 한다.<sup>40)</sup> 이에 따르면 악의를 가진 해커가 이중지급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블록체인보다 더 긴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시도는 전 세계의 선량한 참여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높은 연산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결과 현재 블록체인에 기반한 네트워크상의 거래원장들의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sup>41)</sup>

### 3) 비트코인과 거래소

비트코인은 발행주체 및 관리감독을 하는 중앙통제기관이 없는 가상화

38) 박영호, 전계논문, 373면; 김재진·최인석, 전계서, 23면; 김홍기, 전계논문, 386면.

39) 박영호, 전계논문, 374면; 김재진·최인석, 전계서, 23-24면; 김홍기, 전계논문, 387면.

40) 정승재·권현영, 전계논문, 80면.

41) 박영호, 전계논문, 375면; 정승재·권현영, 전계논문, 81면.

페이코, 시세가 매5분마다 수시로 변동하여 1비트코인(BTC)에 상응하는 고정된 액면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와 교환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스템 밖에서 구입희망자를 찾고 협상을 통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합의를 해야 했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sup>42)</sup>과 수수료의 지급에 대해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매매 또는 교환, 해당 행위의 매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필요하게 되어 현재 비트코인 등의 대부분의 가상자산들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sup>43)</sup>

거래소는 이용자인 매도 희망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매수 희망자로부터는 현금을 각각 맡아 이들 간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이들의 비트코인 및 현금의 증감에 대한 내용을 고객 장부에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각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매수인의 주소로 비트코인이 즉시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가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주소에 보관된 채 거래소의 고객장부 상에서만 증감 처리가 이루어질 뿐이다.<sup>44)</sup> 거래소는 고객의 개인키를 관리하는데,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비트코인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거래소는 자신이 관리하는 주소에서 고객의 개인키를 이용하여 고객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이전해야 한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sup>45)</sup>하면서 그 영업행위를 6가지로 한정하고 있다.<sup>46)</sup> 그리고

42) TPS는 거래처리속도를 부를 때 표현하는 단위로 초당 처리하는 트래픽의 개수를 말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처리하는 카드사인 비자(VISA)는 24,000 TPS(transactions per second, 초당 트랜잭션 수)를 처리한다고 알려졌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평균 초당 7 TPS, 이더리움은 20 TPS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거래처리속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http://wiki.hash.kr/index.php/TPS>).

43) 정영수, 전계논문, 168면; 정승재·권현영, 전계논문, 84면.

44) 정영수, 전계논문, 169면.

45)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제1호 하목.

이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sup>47)</sup>,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sup>48)</sup> 따라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내국인에 대한 영업과 관련해서는 동 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 중 원화마켓(한화 KRW으로 거래되는 시장) 거래소 신고요건인 은행 실명계좌와 ISMS 인증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총 5개의 업체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존재하며, 2022년 9월 26일 자 금융정보분석원의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신고된 26개의 거래업자들(원화마켓 5개사, 코인마켓 21개사) 중 원화마켓 사업자가 차지하는 일 평균 거래금액은 5.2조원으로서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9)</sup>

### 3.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 가. 개요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및 집행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블록체인 등의 개념과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 가지는 법적 성격이 사법(私法)상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참고로 현행 민사집행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여 책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 재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민법 등의 실체법에 의해 개념 및 법적 성격이

46)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된다.

47)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48) 특정금융정보법 제6조(적용범위 등).

49) 금융위원회,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2년 9월 26일 자 보도자료.

정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 민사집행법상 어떤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본질과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 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상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유체물이거나 무체물 중에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 이를 민법상 유체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는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sup>50)</sup> 그러므로 가상자산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능한 자연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건의 개념은 확대되어야 하고, 가상자산이 거래소에서 법정통화와 가상통화 간에 거래가 가능한 객체가 된 이상, 디지털 정보인 가상자산도 물건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51)</sup> 그리고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유체물은 아니지만 전기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sup>52)</sup>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타적 지배가능성과 관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sup>53)</sup>도 있다.<sup>54)</sup>

50) 이에 대해 유체물의 정의를 ‘지배가능한 내재적 가치가 있는 물질’로 정의한다면, 비트코인을 유체물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김이수, “비트코인(Bitcoin)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59권 제4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11., 20면).

51) 최장원,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1호, 2018.11., 291면.

52) 육태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강원법학, 제53권, 2018.2., 246면; 김흥기, 전계논문, 393면.

53) 전승재·권현영, 전계논문, 88~89면; 김이수, 전계논문, 22면; 남기연,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2014, 534면; 박정현, 전계논문, 19면; 전우정, 전계논문, 163면. 이 견해는 비트코인 주소에 대응하는 개인키 소지인만이 송금지시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해 주소에 담긴 비트코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송금지시내역은 분산원장에 모두 기록되며, 한번 송금이 완료된 비트코인은 블록

하지만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관념적인 존재로서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코드에 불과하므로 유체물(동산)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sup>55)</sup>, 가상자산의 재산적 핵심요소는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고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인데 이러한 정보는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이나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sup>56)</sup>, 개인키 자체만으로는 동산에서 성취되는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가상자산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sup>57)</sup>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거래의 객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 역시 물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다. 민법상 금전 내지 화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상자산을 민법상 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가상자산 중 가상화폐로 분류되는 것들

---

체인 기술에 의해 이중지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54) 이 견해는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정보 자체는 법률상 배타적으로 지배가능하지 않지만, 이들이 저장된 전자파일은 사용자가 법률상 배타적으로 지배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물건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정차호·이승현,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30권 제1호, 2018, 156~159면). 이 입장에 의한다면, 가상자산 역시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가능한’ 자연력인 전기에 포함시킬 수 있고, 가상자산이 저장된 위치(전자지갑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 또는 배타적 접속 및 이용을 통해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역시 관리가능한 물건이라고 파악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 55) 박영호, 전계논문, 397-398면; 윤배경, 전계논문, 9면; 이나래,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 및 보유자권리의 성격 검토”, BFL, 제89호, 2018.5., 25면; 정영수, 전계논문, 170면.
- 56) 이현중, 전계논문, 329면; 정영수, 전계논문, 175면.
- 57) 천창민, 전계논문, 56면. 이 견해는 가상자산의 개인키는 데이터에 불과한데, 이 데이터는 분실방지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복사하여 알려줬을 가능성 및 재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므로 “특정인의 전자지갑에서 생성된 개인키는 그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와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한, 개인키를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 현실적으로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가치를 측정하는 화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 일견 금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먼저 금전은 동산이기는 하나, 보통의 동산과 달리 물질적인 이용가치가 아닌 추상적인 가치(금액)만이 의미가 있는 특수한 것인데<sup>58)</sup>, 가상자산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단 민법상 물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동산인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금전에는 국가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화폐’가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은행이 유일하다.<sup>59)</sup> 그러므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특정발행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라고 볼 수 없다.<sup>60)</sup> 또한 가상화폐에는 금이나 은과 같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과 같이 가상화폐의 시세변동이 극심한 경우 이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로 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화폐와 같은 가치측정의 기능을 인정하기 어렵다.<sup>61)</sup>

#### 라.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준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사람은 가상자산(보다 정확하게는 개인키 정보)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이를 물권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준물권(準物權)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sup>62)</sup>

살피건대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이 아니더라도 특정성과 독립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sup>63)</sup>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법·저작권법 등

58)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22, 335면; 편집대표 김용덕, 김종기 집필부분, 「주석민법[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18면.

59)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의 발행).

60) 윤배경, 전계논문, 9면; 전승재·권현영, 전계논문, 89면; 박영호, 전계논문, 388면.

61)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2019.4., 55면; 전승재·권현영, 전계논문, 90면; 정진명, 전계논문, 14-15면; 박정현, 전계논문, 20면.

62) 이나래, 전계논문, 25면.

에서의 지식재산권과 같이 물권과 유사한 권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i) 가상자산 보유자가 민법상 물건이 아닌 가상자산에 대해 등기 또는 점유 등의 공시방법으로 지배권을 표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준물권과 같은 권리구조를 인정할 특별한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고<sup>64)</sup>, ii)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해 개인키 자체만으로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개인키 보유 사실 자체만으로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sup>65)</sup>, iii) 블록체인상의 기록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므로 설령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보유자가 개인키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비트코인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sup>66)</sup>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185조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정주의’의 엄격성과 위와 같은 이유로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준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 마.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물권 내지 준물권으로 보기 어렵다면 가상자산이 무형의 관념적인 존재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종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보유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해 출금을 요구(송금지시)하는 권리를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래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을 상대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은, 내용은 재산권이고, 효력은 청구권이며, 의

63) 윤배경, 전계논문, 10-11면.

64) 윤배경, 전계논문, 11면.

65) 천창민, 전계논문, 56면.

66) 정영수, 전계논문, 171면.

무자의 범위를 고려하면 상대권이다.<sup>67)</sup> 가상자산은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를 상대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sup>68)</sup>, 가상자산의 보유자는 가상자산을 개발한 업체나 ICO<sup>69)</sup>를 통해 신규발행한 자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sup>70)</sup>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도 단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원을 네트워크상에서 조금씩 제공하여 거래내역을 블록으로 나누어 분산·저장하고 있을 뿐, 누군가의 출금요구에 대해 자력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출금할 권리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는 외견상 ‘채권’과 유사할 뿐, 그 목적 급부의 이행주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이를 움직이는 알고리즘과 참여자들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sup>71)</sup>

#### 4. 소결

가상자산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의미하는데,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가상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특정발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가상화폐로서, ‘채굴’의 대가로 취득하거나 거래자들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서 취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간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과 수수료지급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현재 가상자산거래의 대부분은 거래

67) 송덕수, 전계서, 732면.

68) 정영수, 전계논문, 171면.

69)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인 ICO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의 일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초기개발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http://wiki.hash.kr/index.php/ICO>).

70) 전우정, 전계논문, 159면; 정진명, 전계논문, 10면; 박정현, 전계논문, 17면.

71) 전승재·권현영, 전계논문, 88면; 정진명, 전계논문, 10면; 박정현, 전계논문, 17면; 이나래, 전계논문, 26면.

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여러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민법상 물권의 객체를 물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2)</sup> 민법은 객체를 처분과 관련해서는 좁게 해석하고, 처분은 물건 및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은 민법 제98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성격을 물건이나 권리라고 볼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물적 담보가 될 수 없다.<sup>73)</sup> 물론 가상자산 자체가 채권이 아니고,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 역시 준물권이나 채권으로 파악될 수 없다. 하지만 채권계약에서의 ‘객체’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정보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능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sup>74)</sup>, 가상자산은 채권의 목적 내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서두에 소개한 바와 같이 최근 대법원 역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sup>75)</sup>하여 이를 인정할 바 있으므로, 가상자산은 최소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 전자적 표상으로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sup>76)77)</sup>

72) 참고로 유체물과 무체물 중에서 어떤 것을 ‘법률상’ 물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법례로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① 로마법·프랑스민법·오스트리아민법은 유체물과 무체물을 모두 물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② 독일민법과 일본민법은 유체물만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③ 스위스민법과 우리민법은 유체물과 함께 무체물 중에서 법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주석 민법[총칙 2], 258면).

73) 정진명, 전계논문, 13면.

74) 민법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75) 대법원 2018.5.30.선고, 2018도3619 판결.

76) 이나래, 전계논문, 26면; 윤배경, 전계논문, 11면; 이현중, 전계논문, 330면; 이광수·최익구,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474호, 대한변호사협회, 2018. 7면.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법(私法)상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물권·채권·지적재산권에 한정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재산

### III.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 1. 개관

‘민사집행’이라는 개념은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과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중국적인 집행절차로서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를 말하고, 후자는 위 세 가지에 보전처분을 더한 것을 말한다.<sup>78)</sup> 민사집행 중 강제집행은 사법(私法)상 청구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는 절차로서, 민사집행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sup>79)</sup> 그리고 보전처분은 장래에 승소하면 이루어질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현상보전의 처분 또는 판결에 앞서 이루어지는 잠정조치로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말한다.<sup>80)</sup>

이 중 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강제집행에 대해 민사집행법은 전형적인 재산형태인 부동산, 동산 등의 유형재산과 채권 등의 무형재산을 민사집행의 대상으로 보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관하여 기존 민사집행법의 조문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은 실체법인 민법상으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준물권이나 채권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가상자산은 최소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 전자적 표상으로서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채무자의 가

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정순섭, “가상통화의 법률문제”, BFL, 제89호, 2018.5., 11면).

77) 참고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만 파악해도 가상자산이 그 보유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책임재산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에 관한 이후의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78) 민사집행법 제1조(목적).

79)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5~6면;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1, 4면.

80) 이시윤, 전제서, 19면; 김홍엽, 전제서, 9면.

상자산에 대해서도 민사집행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상으로도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은 일반 대중들에게 분명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금전 등의 실물자산을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으로 전환시켜 은닉하는 사례를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연 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상자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강제집행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탐지방안

### 가. 개요

현행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상자산도 현재 일반 대중들에게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정되고 있고, 가상자산의 보유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재산권’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가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특정금융정보법상 인정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도 이와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나.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

### 1) 재산명시절차의 활용 가능성

재산명시절차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요구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법원에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sup>81)</sup> 이 절차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대해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sup>82)</sup>인데,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나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sup>83)</sup>

재산명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이 아닌, 집행권원을 가지는 채권자의 신청이 필요하다.<sup>84)</sup>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sup>85)</sup>, 이 재산명시명령에 대해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sup>86)</sup>, 만약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sup>87)</sup> 그리하여 채무자는 이 기일에 따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i)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ii)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iii)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81) 전병서, 「민사집행법」, 박영사, 186면; 이시윤, 전게서, 252면, 김홍엽, 전게서, 138면.

82) 김홍엽, 전게서, 138면; 정영수, 전계논문, 177면.

83) 대법원 2001.5.29.선고, 2000다32161판결.

84)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85)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

86) 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87)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1항.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됨)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한다.<sup>88)</sup>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 규칙(민사집행규칙 제28조)에 의하지만<sup>89)</sup>, 법원은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정하여 재산목록에 적을 것을 명할 수도 있다.<sup>90)</sup>

살피건대, 이상의 조문에 근거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의 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채무자에게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 있다면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91)</sup> 그리고 만약 법원의 이러한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i)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ii)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iii)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sup>92)</sup> 또한 채무자가 법원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면 법원은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sup>93)</sup>, 이것은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sup>94)</sup>로서 특히 이후 살펴볼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95)</sup>

88)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89) 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

90)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0호.

91) 정영수, 전계논문, 178면; 박영호, 전계논문, 400면.

92)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1항.

93)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94) 헌법재판소는 ‘민사집행법 제68조 위헌확인(재산명시의무 위반자 감치제도 위헌확인)’사건에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4.9.25.자 2013헌마11결정).

95) 박영호, 전계논문, 400면; 정영수, 전계논문, 178~179면. 참고로 해당 저자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현행 재산명시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i)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나,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본안사건이 확정되는 동안 채무자의 가상자산이 그대로 책임재산으로서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ii) 재산명시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등기우편이나 동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활용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iii) 만약 재산명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 채

## 2) 재산조회의 활용 가능성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에서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인의 재산·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위해 조회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제출의 재산 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sup>96)</sup>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i)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거나, ii)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그리고 iii)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 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앞서 언급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에서는 ‘별표’에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총 17곳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 목록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민사집행법으로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조회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표’에 18번 항목을 추가하고, 기관·단체로서 ‘가상자산사업자’를, 조회할 재산으로는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제공 가능성

특정금융정보법은 제2조 제1호 하목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 중 하나로 정의하고, 이들에게 신고의무 외에 금융회사로서 고객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up>97)</sup> 그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신원 및 실제

---

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각각·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게 되고(민사집행법 제69조) 또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여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절차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차 재산명시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한다(정영수, 전계논문, 179~180면).

96) 이시윤, 전게서, 260면; 김홍엽, 전게서, 141-142면; 정영수, 전계논문, 180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sup>98)</sup>,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sup>99)</sup>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보내고 받는 고객의 성명·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기록 및 보관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up>100)</sup> 한편 이러한 정보는 필요한 경우 몇몇 관련기관의 장(長)들에게도 제공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sup>101)</sup>, 특히 이 규정은 민사집행과 유사한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수의 경우 국세청이 채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sup>102)</sup>

살피건대,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통해 고객의 자산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득한 정보를 집행법원 내지 집행관에게 제공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 탐지 및 그 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정보를 집행법원 내지 집행관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등에 대해 개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97)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98)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이용자의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1월 30일부터 거래소에 실명계좌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에 본인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므로, 타인 명의의 통장거래나 범죄목적의 가상화폐 투자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99)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 1).

100)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제1호 및 제2호.

101)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항.

10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3월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채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여, 고액채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를 한 바 있다.

### 3.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 가. 개요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판결절차 또는 이를 대체하는 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고 이를 근거로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보통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송의 목적이었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함으로 인해 후에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막상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취해지는 잠정적인 처분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 이하에서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sup>103)</sup> 하지만 특정물인도청구권의 경우에도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다면, 주위적으로 가처분, 이행불능·집행불능일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인 가압류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sup>104)</sup>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살펴보면, 가령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와 비트코인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이전 등에 관한 계약을 맺고 거래소에 자신의 비트코인을 위탁했다면, 이용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좀 더 구체적으로 거래 정산에 따른 지급청구권 내지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105)</sup> 그러므로 채무자인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가지는 이러한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2018년 비트코인 출금청구권을

103)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104) 이시윤, 전게서, 586면; 김홍엽, 전게서, 433면.

105) 박영호, 전계논문, 401면; 윤배경, 전계논문, 13면.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례<sup>106)</sup>를 시작으로, 가상화폐 전송·매각 등 이행청구채권<sup>107)</sup>, 가상화폐 반환청구채권<sup>108)</sup>과 가상화폐 지급청구권<sup>109)</sup>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거래하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가지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 4.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 개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한다.<sup>110)</sup>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므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유체동산 또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중 어느 하나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한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가상자산은 새로운 형태의 재산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이 규율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재산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

106) 울산지방법원 2018.1.5.자 2017카합10471 결정.

1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자, 2017카단817381결정.

1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19.자, 2018카단802743결정.

1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12.자, 2018카단802516결정.

110) 민사집행법 제64조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하여 책임의 객체는 재산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이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조 동항 제20호에는 ‘그 밖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각 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들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 이익도 강제집행의 대상인 책임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물건이나 권리, 이익의 재산적 가치가 민사집행법상 책임재산 해당성의 핵심적인 요소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여 모든 물건이나 권리, 이익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현중, 전제논문, 320면).

므로 이하에서는 먼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어떤 형태의 강제집행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한지를 살피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나. 강제집행 대상성과 절차에 대한 검토

### 1) 강제집행 대상성에 대한 검토

앞서 가상자산이 가지는 법적 성격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최소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채권의 목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앞서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무형’의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할 수 없다.<sup>111)</sup>

그러므로 현행 민사집행법상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야 하는데, 가상자산 자체는 채권이 아니므로 결국 기본적으로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상 집행대상으로서 ‘그 밖의 재산권’은 부동산, 유체동산 및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말하며, 재산권으로서 양도성 및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sup>112)</sup>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상표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재산권 외에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이 앞으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sup>113)</sup> 이 점을 고려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역시

111) 이에 대해 가상자산(비트코인)을 ‘금전’이 아닌 ‘동산’으로 보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전승재·권현영, 전제논문, 92면). 한편 현행 민사집행법상으로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재진·최인석, 전제서, 40면).

112) 이시윤, 전제서, 493면.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sup>114)</sup>

## 2)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검토

### 가)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의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재산권’은 그 대상이 부동산·동산·채권에 비해 열려있지만,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들을 위해 마련된 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와 민사집행규칙 제174조에 근거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부동산에 대한 일괄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그 밖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에 따라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금전집행으로서 ‘압류→현금화→배당’의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데, 이 중 현금화명령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채권자는 집행대상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집행대상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 등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구채권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에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sup>115)</sup>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게 되는데, 이때 집행대상인 ‘가상자산’이 가지는 특수성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지만<sup>116)</sup>,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기

113) 사법연수원, 민사집행 IV(동산·채권 등 집행), 법원실무제요, 2020, 512면.

114) 이시윤, 전게서, 494면; 이현중, 전계논문, 331면; 정영수, 전계논문, 185~186면.

115) 이현중, 전계논문, 332면.

116)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항.

술에 기반하고 있기에 이론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게 되는 제3채무자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17)</sup>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의 신속성과 편리함을 위해 가상화폐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보아 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고, 압류 이후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이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경우와 거래소에 보관된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집행절차와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나) 가상자산의 보관장소에 따른 강제집행절차

##### ① 가상자산을 채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 ㉞ 압류절차와 채무자 협조의 필요성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먼저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신청서에는 민사집행법 제225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사집행규칙 제159조에서 정한 내용들도 기재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그 구조상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만 기재되면 충분하다. 다음으로 채권자는 압류목적물을 특정해야 하는데<sup>118)</sup>, 채권자는 가상자산 보유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특정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압류목적물의 특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전자지갑 내의 가상자산이 복수인 경우에는 압류순위 등을 표시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sup>119)</sup>

117) 그 결과 이러한 경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이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항).

118) 민사집행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참고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9) 앞서 가압류 부분에서 언급했던 가상화폐 전송·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인정했던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자 2017카단817381 결정)에서는 약관에 따라 가지는 가상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별지

채권자의 압류신청에 대해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주문에는 압류의 취지와 채무자의 처분금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 역시 채무자의 사실상·법률상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따라 개별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의 내용과 거래방식에 따라 일반적인 처분금지 외에 구체적인 처분금지를 명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sup>120)</sup>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채무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분금지명령은 선언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의 경우 거래를 위해서는 공개키와 개인키가 필요한데, 이 중 개인키는 전자지갑의 소유자만 알고 있는 정보이므로 채무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처분금지명령이 실질적으로 작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협력의무를 입법을 통해 명시하고, 채무자의 처분금지명령위반을 직·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sup>121)</sup>

#### ㉔ 압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

이와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만약 채무자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개인키에 관한 정보를 망각 내지 분실하거나 집행관에 대해 정보제

---

에 복수의 가상화폐가 있는 경우 가압류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 바 있다.

“3.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이더리움, 나. 비트코인, 다. 비트코인 캐쉬, 라. 그 외의 알트코인”

120) 이현중, 전계논문, 334면. 같은 취지로 민사집행법상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및 압류선박의 정박’(민사집행법 제174·176조), ‘예탁유가증권지분의 압류’(민사집행규칙 제177조), ‘전자등록주식 등의 압류’(동 규칙 제18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고될 수 있다.

121) 이현중, 전계논문, 335면. 참고로 채무자의 가상자산처분을 저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 최근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55조 제3항이 참고될 수 있다.

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압류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결국 개인키에 대한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하에서는 압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금지명령에 부수하여 가상자산을 집행관의 지압으로 이전하게 하는 명령이 고려될 수 있다. 이 이전명령은 채무자로부터 가상자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중국적으로 박탈하는 현금화단계의 집행처분이 아니라 채무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방지하는 압류단계의 집행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sup>122)</sup><sup>123)</sup>,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압류명령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유도하거나 압류명령의 주문에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한다”의 문구를 추가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규칙 제159조를 일부개정하는 방법이 입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집행관의 부수적인 행위에 의한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 집행법원이 행하는 집행절차에 있어 집행관은 부수적인 행위를 담당하는데, 지시채권의 압류<sup>124)</sup>와 채권증서의 인도<sup>125)</sup>에 관한 조문을 유추하여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점유 내지 인도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한편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잠긴 문을 여는 등 민사집행법 제5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조문이 가상자산에 유추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합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며<sup>126)</sup>, 만약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더

122) 이현중, 전계논문, 336면.

123) 민사집행법령상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민사집행규칙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제1항에서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과,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에서 집행관이 배서금지증권을 점유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124)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

125) 민사집행법 제234조(채권증서).

126) 피압류채권과 채권증서와의 관계를 가상자산과 개인키의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과 유체물인 채권증서와는 달리 개인키는 무체물로서 정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라도 강제처분 권한이 없는 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무자의 주거 등에 관한 장소수색으로 채무자의 개인키를 찾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극히 예외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의 종이지갑 또는 메모지 등에 기록된 개인키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웹지갑’ 패스워드가 채무자 PC의 웹브라우저에 자동저장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보안이 매우 허술한 경우가 아닌 이상 수색을 통해 개인키를 알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127)</sup>

세 번째로는 강제집행방법으로서 간접강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간접강제는 채무의 성질상 직접강제나 대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집행방법으로, 주로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이용된다.<sup>128)</sup> 가산자산의 경우, 채무자가 직접 가상자산의 개인키를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그가 개인키에 관한 정보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을 인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개인키 제공에 대한 채무자의 협조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개인키의 인도의무 및 상당한 인도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되는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한다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sup>129)</sup>

마지막으로는 채무자가 비밀키에 대한 정보제공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로서는 이를 강제적으로 알아낼 기술적 수단이 없으므로, 이 경우 압류개시 시점에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와 함께 그 잔액을 기재해 두고, 그 후 채무자의 전자지갑의 잔액을 모니터링 하다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잔고가 감소하게 되면 채무자를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sup>130)</sup> 이 방법은 기존에 채권자가 채무자와 비트코

127) 전승재·권현영, 전계논문, 93면.

128) 김홍엽, 전게서, 392면; 이시윤, 전게서, 515~518면.

129) 정영수, 전계논문, 189~190면; 박영호, 전계논문, 411면; 이현중, 전계논문, 339면; 윤배경, 전계논문, 15면.

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이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개키를 사전에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실현될 수 있다. 공개키는 은행계좌번호와 유사하므로 공개키만 알면 그 전자지갑에서 이루어진 전체 입출금 내역조회를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임의처분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압류개시시점의 채무자의 가상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만약 그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형법상으로 제재함으로써 채무자의 임의적 처분금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 ㊤ 현금화절차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해 법원의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현금화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고, 압류된 가상자산 자체가 금전채권도 아니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이용될 수 없고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131)</sup>

한편 가상자산을 매각명령의 매수인 또는 양도명령의 양수인에게 이 전해주어야 하므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압류의 대상인 가상자산을 집행관의 지갑에 미리 이전해 놓은 상태에서 법원의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이 발령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각명령·양도명령 신청서의 ‘신청취지’에 압류된 가상자산이 집행관의 지갑에 이전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고, 관련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인용

130) 이 방안은 ‘전승재·권현영, 전계논문, 94~96면’에서 소개된 의견을 수정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동산으로 보고, 민사집행법상 동산집행절차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개인키를 알아내지 못한 경우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운반이 곤란한 때’로 보아 봉인(封印)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하게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데, 이 봉인스티커에 전자지갑의 공개키 주소와 함께 그 잔액을 봉인표에 기재하여 두고, 향후 채무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잔액이 전액 대비 감소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상봉인등무효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가상자산을 ‘그 밖의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부득이 같은 논리구조를 바탕으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소개한다.

13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결정을 하는 실무운용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된 경우

### ㉠ 채무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가지는 권리와 강제집행절차

앞서 가상자산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인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거래소에 자신의 비트코인을 위탁했다면, 이용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때 거래소는 이용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에 대해 반환을 청구한다면 그에 따른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sup>132)</sup>

한편 이용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위탁받은 거래소는 이를 당해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개인키 또한 인도받아 보관하게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소유자인 이용자는 자신이 위탁해 둔 비트코인 잔액의 범위에서 이를 ‘출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up>133)</sup> 그러므로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을 위탁자인 채무자가 출금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으로서, 이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법상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민사집행법 제242조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보아 동법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그 결과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sup>134)135)</sup>

132) 정영수, 전계논문, 190면.

133)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는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전승재·권현영, 전계논문, 96면).

134) 정영수, 전계논문, 191면.

135) 참고로 준점유에 관한 민법 제210조에 따라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점유권에 관한 조문들이 준용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거래소에 위탁된 ‘무형의 재산권’인 비트코인에 대해 채무자의 간접점유 내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채무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가지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무형의 데이

## ㉔ 압류절차

### 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의 특정

채권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먼저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기재하여 채권을 특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권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채무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sup>136)</sup> 이와 관련해서는 채무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경우가 참고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하고자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sup>137)</sup>에 의해 예금자의 계좌번호 및 예금액 등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예금채권의 경우에는 피압류채권 자체의 특정 기준을 크게 완화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의 본·지점을 특정하고 여러 종류·계좌의 예금이 있는 것을 상정하여 압류의 순서를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는데<sup>138)</sup>, 이러한 처리방법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복수의 종류 및 계정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압류순서를 지정하여 채무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가지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일괄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액수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가상자산이 그 성질상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있으므로, 특정해야 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일정한 환산시점을 기재하고, 환산기준 및 환산 후의 금액의 상한 등을 함께 기재하여 압류할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특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 원화로 환산된 금액의 상한을 기재하여 초과압류되는 것을 방

터에 대한 준점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 2021.2., 23-26면 참조).

136) 채무자명의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재산조회에 이용가능성 및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개정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 있다.

137)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138) 김홍엽, 전게서, 325면; 이시윤, 전게서, 435면.

지하고, 압류명령에 따른 처분금지효 및 지급금지효가 미치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 압류명령

법원이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대해 적법성을 판단하고 압류명령을 내리게 되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sup>139)</sup> 그리고 압류명령에 의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해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sup>140)</sup> 그 결과 압류명령의 송달 이후 제3채무자인 가상자산거래소가 채무자에게 변제하여도 그 채무는 소멸되지 않고, 후에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을 받으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한다.<sup>141)</sup> 그리고 이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채무자의 무자력 등에 의한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거래소에 보관된 본인의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게 되면,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채권자의 요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로서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은 거래소는 채무자의 계정에 대한 접근금지라든지 채무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주소·계좌·거래 등의 서비스를 즉시 중단 내지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sup>142)</sup> 하지만 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방적 조치를 강제하거나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현황을 파악하고 피압류채권에 대한 정보

139)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항, 제3항.

140) 동법 동조 제1항.

141) 이시윤, 전게서, 445-446면; 김홍엽, 전게서, 331면; 전병서, 전게서, 371면.

142) 전승재·권현영, 전계논문, 97면; 이현중, 전계논문, 337-338면. 특히 이러한 조치를 압류명령에 따른 지급금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의무로서 파악하려는 견해도 있다(박영호, 전계논문, 405-406면).

로부터 자기 채권의 만족을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3채무자 진술제도’가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법원의 제출 명령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금융정보로서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으므로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해 마련된 금융실명법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주체를 규정하는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정의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누락되어 있고, 제2호의 ‘금융자산’에서도 가상자산이 누락되어 있기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과 관련한 동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자산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는 그 존재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개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양 법이 통일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현금화절차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이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와 달리 거래소가 채무자의 개인키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을 내림에 있어 압류와 관계된 가상자산이 집행관의 지갑으로 이전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3채무자에 의한 환금성이 용이하고, 유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인정되므로, 앞서 살펴본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sup>143)</sup>에 준하여 진행되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43)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 5 내지 제182조의7.

법원은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심문기일에는 심문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무운용으로서는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심문절차의 방식으로서 심문서를 채무자 앞으로 송달하여 일정한 기한 내에 회답을 구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가상자산의 소유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가지는 ‘출금할 수 있는 권리’는 은행계좌에 있어서의 그것과 유사하고, 거래소에 보관된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유사하므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생각하건대 이 견해에 의하면 압류에 관계된 가상자산을 제3채무자가 스스로 현금화하여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만족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민사집행규칙이 가상자산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sup>144)</sup>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sup>145)</sup>에 있어서는 양도명령과 매각명령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의 경우에만 특별히 추심명령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집행절차의 통일적인 운용에 반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 5. 소결

이상으로 가상자산이 현행 민사집행법에 비추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방안 및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찰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탐지하는데 있어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144) 민사집행규칙 제179조 내지 제182조.

145) 동 규칙 제182조의5 내지 제182조의9.

재산조회의 경우, 현행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에 ‘가상자산사업자’를 개정을 통해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확인 의무가 있지만, 이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집행법원 내지 집행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들이 채무자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등에 대해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인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가지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우리 법원이 가압류했던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는 채무자의 가상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키 정보에 대해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압류명령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협력의무를 개정을 통해 입법화시키고, 채무자의 처분금지명령 위반을 직·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압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i)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처분금지명령에 부수하여 가상자산을 집행관의 지갑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명령, ii) 집행관의 부수적인 행위를 통한 가상자산의 점유 내지 인도, iii) 간접강제, iv) 가상자산 감소시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금화절차에 있어서는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활용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채무자가 그가 가상자산을 위탁한 거래소를 상대로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은 은행의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출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를 ‘채권’으로,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보아, 민사집행법상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제3채무자인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채권자의 요구에 대해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거래소에게 지급금지 외에 압류를 방해하려는 채무자의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 진술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가상자산과 관련된 채무자의 금융정보를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금융실명법 제2조에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한편 거래소에 보관된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데 있어서도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 IV. 결론

지난 몇 년간 고속성장했던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속화되어 최근 크게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수십 조원의 규모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여 가상자산을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금 등의 실물자산을 은닉하고자 가상자산으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지,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고 고찰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의 출현은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과 발전에 기인한다. 이 기술과 관련하여 전자지갑·공개키·개인키 등의 특별한 개념들이 파생되었고, 이들이 가지는 특성에 주목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 등의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가상자산은 민법 제98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성격을 물건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재산 또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가상자산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가 활용될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확인의무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관련정보를 집행법원 내지 집행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등에 대해 개정하는 방법이 입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상자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먼저 법원이 채무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가지는 가상자산반환청구권에 대해 이미 몇 차례 가압류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는 가상자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트코인이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다면 개인키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압류명령 이후 처분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협력의무를 입법을 통해 명시하고, 처분금지명령위반을 직·간접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압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현금화절차에 있어서는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자산반환청구

권이 있으므로, ‘채권’으로서 민사집행법상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압류명령 이후에 채무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하여 거래소가 후에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거래소에게 지급금지 외에 압류를 방해하려는 채무자의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채권자는 현재 ‘제3채무자 진술제도’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채무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보다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제2호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채무는 갚아야 한다는 원칙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보유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가상자산을 재산으로서 보유한 자가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민사집행을 통해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sup>146)</sup> 가상자산은 현재 단일 법령이 아닌 여러 법에 걸쳐 각각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규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학계와 실무자들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인해 강제집행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입법적 보완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 2022.12.4., 심사개시일: 2022.12.8., 게재확정일: 2022.12.22.)



### ▶ 성덕근

가상자산, 가상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강제집행

146) 전승재·권현영, 전계논문, 107면.

## 【참 고 문 헌】

### I. 단행본

- 김재진·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 2022
-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1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22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 전병서, 「민사집행법」, 박영사, 2020
- 편집대표 김용덕, 김종기 집필부분, 「주석 민법[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 페트로 프랑코(김동은·어경훈 譯), 「제대로 배우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암호학, 컴퓨터공학, 경제학을 중심으로」, 중앙경제평론사, 2019
- 황정훈·서용모·정승욱·양영식·홍진욱·송인방, 「미래사회 with 블록체인」, 박영사, 2020

### II. 논문

- 고형석,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2021
- 권영준,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비교사법, 제28권 제1호, 2021.2
- 권지혜, “가상자산 거래의 법제화와 착오이체의 법적 판단에 관한 시론-대법원 2021.12.16.선고, 2020도9789 판결을 대상으로-”, 법학연구, 제68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김이수, “비트코인(Bitcoin)의 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9권 제4호, 2018
- 김지웅, “가상자산에 관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대한 검토”, BFL, 제102권, 2020.7
-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4
- 남기연,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2014

- 박선중·김용재,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시 법률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1호, 2018.2
- 박성민, “전자화폐의 위·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고찰”, 동아법학, 제53호, 2011.11
- 박영호,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실무연구(V), 제141집, 법원도서관, 2021
- 박정현,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민사적 일반 이론의 관점에서-”, Law & Technology, 제18권 제1호,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2022
- 송문호,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탈중앙화”,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9.9
- 신지혜, “가상자산의 특성과 법적 규율”, 소비자법연구, 제8권 제3호, 한국 소비자법학회, 2022.8
- 윤배경,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인권과 정의, 제744호, 2018.6
- 윤진수, “전부명령의 요건과 효력”,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 석하김기수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2.6
- 육태우,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강원법학, 제53권, 2018.2
- 이광수·최익구, “법적 성질로 본 가상화폐의 개념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474호, 대한변호사협회, 2018
- 이나래,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 및 보유자권리의 성격 검토”, BFL 제89호, 2018.5
- 이현중, “가상재산(假想財産)에 대한 강제집행(強制執行)”, 민사집행법 제정 20주년 기념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2.6
- 전승재·권현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2018.5.30
- 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민법상 물건, 금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 검토-”, 금융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9.4
- 정경영,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성질과 그 법적 포섭”, 금융법연구, 제17권 제3호, 2020.12

- 정다영,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2019.4
- 정순섭, “가상통화의 법률문제”, BFL, 제89호, 2018.5
- 정영수, “가상자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소고”, 서울법학, 제29권 제2호, 2021.8.31
- 정진명, “암호화폐의 민사법적 문제”, 민사법학, 제98권, 2022
- 정차호·이승현,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30권 제1호, 2018
- 천창민, “가상자산 거래의 물권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UNIDROIT의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63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3
- 최경진, “데이터와 사법상의 권리,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정보법학, 제23권 제1호, 2019
- 최단비,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및 거래소 이용자의 권리 구제방안”, 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20
- 최장원,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9권 제11호, 2018.11
- 황석진, “암호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ICO)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홍은표, “암호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위한 시론”,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2109.12

### III. 기타

- 국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2021년 3월 15일 자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2022년 9월 26일 자 보도자료
- 연합뉴스,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명칭도 혼선’, 2018년 1월 9일 자 기사

연합뉴스, '검찰, 2억 7천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국고 귀속', 2021년 4월 1일 자 기사

<http://wiki.hash.kr/index.php/TPS>

<http://wiki.hash.kr/index.php/%EC%9E%91%EC%97%85%EC%A6%9D%EB%AA%85>

#### IV. 기타(해외문헌)

Binance-Researh, 2021 Global Crypto User Index-Crypto user profiles, attitudes, and motivations

Cambridge Center for Alternative Finance, Global Cryptoasset Regulatory Landscape Study, 2019

Communiqué,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Buenos Aires, 2018. March 19-20

---

---

**Abstract**

---

---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civil execution of virtual assets

SUNG Duk Keun\*

Virtual assets are electronic vouchers that have an economic value and can be electronically traded or transferred.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cannot be seen as things under the civil act, but it can be the subject of claim as at least property or property value. So the right possessed by those who have them basically has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

On the civil execution on virtual assets, Specification of Property and Inquiry can be used for the detection of the debtor's virtual assets. But for the more efficient operation, 'Virtual Asset Provider' should be added on 'Attached Form' of the article 36(1) of Enforcement rule of the civil execution. And article 10 of Specified Financial Information Act needs to be amended to allow the court or the execution officer to receive an information of debtor's virtual assets from virtual asset provider.

For the ruling on a seizure on virtual assets, it should be regarded as 'Other property right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execution for a claim' should be applied to virtual assets.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execution vary depending on the place of storage for virtual assets. If the Bitcoins are stored in the debtor's electronic wallet, his cooperation is required to use his 'Private Key'. Therefore,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prohibition from debtor's disposing, his obligation to

---

\* Senior Research Fellow of Korean Society of Law, Ph.D. in Law.

cooperate should be specified in the Act. If the Bitcoins are stored on the virtual assets exchange,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execution for a claim’ should be applied to Bitcoins, because the debtor ha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virtual assets against the exchange. And legal basis are needed to neutralize his disposal after Order of Seizure of the Court.

On the procedure of Encashment, it seems to be used Sale Order and Transfer Order as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execution for Electronic registered stock’.



▶ **SUNG Duk Keun**

Virtual asset, Virtual currency, Blockchain, Bitcoin,  
Compulsory execution